

1. 개정이유

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중, 지정시 활용되지 않는 기준인 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」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‘질환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’과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4조제4항 신설(’19.4.30.)에 따라 동일 내용을 정하고 있는 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“4항”을 제“3항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‘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’ 삭제
(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3호 삭제)
- 나.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 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삭제
- 다. 「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제“3항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) ① 「희귀질환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<u>3.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</u> 4. ~ 6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2조(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 <u>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</u> ⑤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7조(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⑤ ----- <u>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